

재정경제부, PQ기준 등 회계규정 개정 경영상태 평가에 신용등급 반영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29일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7월 28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9일 재정경제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7월 28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이 공사규모별로 세분화되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보다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중시된다.

또 건설업체의 경영상태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접수화한 절대평가방식이 도입되고 수시결산 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중견건설업체의 턴키·대안방식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500억원 미만 대형공사입찰의 적격심사 배점에서 가격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 등 각 발주기관

이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개정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을 확정하는 대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찰이 진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PQ제도가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부문의 변별력이 부족한데 반해 경영상태가 낙찰자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의 선별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기술경쟁력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상태부문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합병과 분할, 사업양수도 등 수시결산을 남발하고 분식결산 등을 통한 지표의 왜곡이 심하며 실시간 평가되고 있는 시장평가와도 괴리가 발생해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영상태평가에 시장

평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PQ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PQ기준을 공사규모별로 세분화해 기업규모별로 수주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공평가 결과와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실적 등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장비보유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60% 이상으로 되어 있던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 시공비율을 50% 이상으로 낮추고 PQ공종금액 50% 미만인 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동일공사 실적율 100% 이상 요구하던 것도 폐지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건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해 기존 채무비율에 기초를 두고 있는 평가점수와 병행하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규모가 큰 공사부터 이번에 도입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만으로 평가하도록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경부터는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신용등급에 의한 점수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밖에 건설한 중견 건설업체의 대형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대형공사의 적격심사 배점을 설계평가 45점, 입찰가격 35점, 공사 수행능력 20점에서 45 : 40 : 15로 조정했으며,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가운데 100억~50억원 규모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적용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항목을 삭제했다.

■ PQ기준

건설산업의 기술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경쟁력 있는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과 기술능력부문의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경영상태평가에 신용등급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사입찰 전에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사업의 공사수행능력을 미리 심사,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공사비 100억원 이상 교량, 댐 등 22개 등종에 적용하고 있는 PQ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PQ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입찰을 허용하고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PQ점수가 공사수행능력점수에 일정비율 반영되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주며 턴키·대안입찰 공사의 경우는 20점이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공사의 품질확보와 건설기술발전을 위해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량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PQ심사항목의 변별력을 강

화하기로 했다.

기술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입찰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부문의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체의 경영상태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평 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점수화한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수시결산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심사항목별로는 1천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등 공사규모별로 PQ기준을 세분화해 기업규모별 수주경쟁과 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시공경험평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 보유여부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나 기준 PQ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우량업체 선별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시공경험이 중요한 공사비 1천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우량업체 선별을 위해 경영상태 비중을 3점 축소하는 대신 시공경험과 기술 능력 배점 비중을 각각 2점, 1점씩 확대해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비중을 32 : 35 : 33에서 34 : 36 : 30으로 변경했다.

또 중견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사비 1천억원 이상~1천

억원 미만 공사와 500억원 미만 공사로 세분화해 기존 30 : 37 : 33이었던 배점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공사는 32 : 35 : 33으로, 500억원 미만 공사는 30 : 35 : 35로 각각 바꿨다.

■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기준의 형식성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기술능력평가와 기술개발 유도가 미흡했다.

기술능력부문의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설비·장비보유와 특수공법·기술보유 등 평가의무를 상실한 항목은 폐지하며 배점도 1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시공평가 결과와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신설하는 대신 성질이 유사한 신인도 분야의 우수시공 업자 가점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 경영상태평가

분식회계 유발, 수시결산 남용, 시장평가와의 괴리 등 경영상태평가 제도가 기존 PQ제도 중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왜곡된 경영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진화시켰다.

기존 경영평가제도는 소수의 제한된 지표를 활용, 정부평가와 시장평가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업체 평균치에 의한 상대평가에 따라 수시결산제도의 악용, 분식회계 등으로 경영상태 평가자료서의 신뢰성과 대

표성이 미흡했다.

또 매년 말 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최소 6개월 내지 1년 6개월 간의 시점 차이가 발생하여 실시간으로 평가되는 시장평가와 비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점수화한 절대평가방식을 경영상태 평가에 도입하여 상대평가에 따른 정부평가 대신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절대평가되고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함으로써 우량업체 선별 능력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신용평가등급 도입 초기의 혼란을 축소하고 신용평가를 받는 업체가 조달청 1등급 업체 137개사 중 회사채 평가를 받은 업체는 53개사, 기업어음 평가를 받은 업체는 79개사로 소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평가방식과 병행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도 도입의 성과를 봄가며 상대평가되고 있는 현 경영상태평가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절대평가방식인 신용평가등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회사채 평가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사채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회사채 발행의 필요성이 없는 기업에게까지 회사채 발행을 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병행하여 평가하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신용평가등급의 선택적 활용 대상규모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우나 지난해 3월 PQ제도 개선 시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의 확대 적용 방침을 예고한데다 신용평가등급에는 기업 규모도 고려되는 점을 고려해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영상태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한 후 평가하던 것을 개별평가 후 그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방식의 경우 1천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비재무항목을 도입해 1천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등급과 감사 의견, 영업기간을 반영하고 500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 영업기간만 반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하기로 예고했으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재무상태는 우량하나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지 않고 정부평가를 사용하는 업체는 500억원까지만 비재무항목에 신용평가등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수시결산안 인정은 수시결산 시점이 상대평가 비교기준(전년도

업체 평균비율)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분식회계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를 폐지하고 20% 이상 자본이 증가하거나 20% 이상 부채가 줄어들 경우 할 수 있던 반가결산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도 직전 회계년도 합병회사의 결산시의 합의로 평가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수시결산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합병이나 분할 또는 양도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되도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 신인도 평가

우수건설업체에 대한 가점(1점)을 폐지하되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가점을 폐지를 유예토록 했다.

공동예약심사의 경우 경영상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해 산정하던 것을 신인도 심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이를 합산하도록 했다.

■ 적격심사기준

△대형공사 입찰가격 배점조정
대형공사 입찰배점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과 500억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500억원 이상은 공사수행 능력 : 설계평가 : 입찰가격의 배점을 현행대로 20 : 45 : 35로 유지하되 500억원 미만은 가격평가 비중을 확대해 15 : 45 : 40으로 변경한다.

또 500억원 미만 공사의 평점은 “ $40 \times \text{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text{입찰가격}$ ”으로 산정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는 터키 입찰은 “ $\text{획득 점수} - [(\text{추정가격의 } 80\% \text{ 상당가격}-\text{입찰가격}) / \text{추정가격}] \times 40$ ”으로, 대안입찰은 “ $\text{획득 점수} - [(\text{추정가격의 } 80\% \text{ 상당가격}-\text{입찰가격}) / \text{추정가격}] \times 55$ ”로 평점을 내도록 했다.

△경영상태평가 반영

100억원~50억원 공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항목 가운데 매출액 영업이익을 제외토록 했다.

■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PQ의 시공경험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시공비율(60% 이상)을 완화(50% 이상)하고, PQ공종 금액 50% 미만인 공사에 대해 대표자의 동일공사 실적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하던 조건도 삭제해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